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막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고,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주차공간·데크의 면적,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및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등으로 정하는 등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보완·신설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0. 29. ~ 12. 9., 2025. 1. 15. ~ 1.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농촌 생활 인구 확산)
 - 규제 강화 1건(농막의 설치 기준 명확화)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중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3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연재
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
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
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
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
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
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65조제1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2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 ----- ----- ----- -----.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u>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u>	1. ----- ----- ----- ----- ---- <u>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u>
<u><신 설></u>	<u>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u>
<u><신 설></u>	<u>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u>

<신 설>

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
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
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
호의2에서 같다)이 모두 20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
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
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하
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
2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
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
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
로 설치할 것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
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
조신고를 했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
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
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
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
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
· 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
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1의2.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
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
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
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
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
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
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
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
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7조제
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 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
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
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
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
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
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
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
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
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

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
막과 함께 농촌채류형 쉼
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채류형 쉼터
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
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채류형 쉼
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
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
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
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
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u>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u> <u>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u> <u>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u> <u>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u>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제65조(규제의 재검토) ----- ----- ----- -----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생 략) <u><신 설></u> <u><신 설></u>	----- ----- -----.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채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지과	
연 락 처	(044) 201 - 1742, 1734